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6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 박주민·이재관·이성윤

이기헌 • 박범계 • 안태준

장종태 · 강준현 · 윤준병

김우영 · 서미화 · 문정복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서면 심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고, 영장의 집행 시에 당사자 및 책임자의 참여 권과 관련한 원칙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도 발부 이전 단계에서 영장판사의 대면심리절차 등 사전적 심리 절차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전자정보의 특성상집행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등 피압수자의 참여권을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과정에 있어서도 대면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선별압

수의 원칙을 준수하며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압수·수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행법상의 책임자, 주거자 등에 더하여 피고인, 변호인 등이 압수 · 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제123조의2).
- 나.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의 경우 피고인, 변호인 등에게 영장의 집행절차 및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제123조의3).
- 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 의견진술, 목록교부 등의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함(제130조의2).
- 라.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기관,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대면심문절차를 규정함(제215조의2).
- 마. 압수·수색의 대상이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정보저장매체, 사용할 검색어, 검색의 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215조의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영장의 집행 일시와 장소를 제121조에 규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3조의2 및 제1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3조의2(영장집행과 의견 진술) 피고인, 변호인 및 제123조 각 항에 규정된 사람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3조의3(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압수·수색할 물건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인 경우에는 제123조의2에 규정된 사람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 및 그방법 등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1. 제123조의2에 따라 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자가 의견을 진술한 때
- 2. 제128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129조에 따른 목록을 교부한 때
- 3.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한 때

제215조의2 및 제2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5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있다.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심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15조의3(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청구 시 기재사항) 검사가 제215조 에 따른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그 압수·수색할 물건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 정보의 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구체적 집행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19조 본문 중 "제132조까지"를 "제123조까지, 제123조의2, 제123조의3. 제124조부터 제130조까지, 제130조의2, 제131조, 제13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수·수색영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2조제2항, 제123조의2, 제123조의3 및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215조의2, 제215조의3 및 제2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22條(令狀執行과 參與權者에	第122條(令狀執行과 參與權者에
의 通知) (생 략)	의 通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
	가 해소된 때에는 영장의 집행
	일시와 장소를 제121조에 규정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23조의2(영장집행과 의견 진
	술) 피고인, 변호인 및 제123조
	<u>각 항에 규정된 사람은 압수·</u>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u><신 설></u>	제123조의3(전자정보의 압수ㆍ수
	색) 압수·수색할 물건이 컴퓨
	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
	보인 경우에는 제123조의2에
	<u>규정된 사람에게 압수·수색영</u>
	장의 집행절차 및 그 방법 등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데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30조의2(압수・수색조서의 기
	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

<신 설>

- 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1. 제123조의2에 따라 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자가 의견을

 진술한 때
- 2. 제128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129조에 따른 목록을 교부

 한 때
- 3.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한

 때
- 제215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 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 정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정하 여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소환하여 심 문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심

<신 설>

第219條(準用規定) 第106條, 第10 7條, 第109條 乃至 第112條, 第 114條, 第115條第1項 本文, 第2 項, 제118조부터 <u>제132조까지</u>, 제134조, 제135조, 第140條, 第1 41條, 第333條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 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 但,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 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處分 을 함에는 檢事의 指揮를 받아 야 한다.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15조의3(전자정보에 대한 영 장 청구 시 기재사항) 검사가 제215조<u>에 따른 영장을 청구함</u> 에 있어 그 압수 · 수색할 물건 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 장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 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 정보의 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 상기간 등 구체적 집행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219條(準用規定) ----------제123조까지, 제123조의2, 제123조의3, 제124 조부터 제130조까지, 제130조의 2, 제131조, 제132조----

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

•